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등〉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9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 등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등

가. 개정안 요지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1)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함)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제5호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5. ~ 15. (생략)	5. ~ 15.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현행	개정안
	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u>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u> 2. <u>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u> 3. <u>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2025. 1. 21.)되었고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임.

- 그런데 최근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에의 접근 및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제2조제1항제3호2)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능정보 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제18조3)),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제19조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

-
- 2)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3) 「디지털포용법」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
 -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제20조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담기관 지정은 “디지털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디지털포용법」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제조·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로 규정하였는데, 이 중 현행법 제15조⁶⁾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임.

- 따라서 업무의 관련성 측면에서 센터의 업무와 침해사고 대응 업무는 그 관련성이 다소 낮아⁷⁾ 센터가 전담기관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개정안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 전담기관은 침해사고 발생 시 지정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대응 업무가 종료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한시 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등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침해사고 시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2건⁸⁾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심사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디지털포용법**」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담기관의 사업 중 안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은 센터의 업무와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음.

8) 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81호,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②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939호,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 침해사고 대응 지원 관련 개정안 비교

정진욱의원안(2210681)	최민희의원안(2210939)	조인철의원안(221159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